

사업연도	. ~	공 제 감 면 세 액 계 산 서(1)	법인명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※관리 번호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margin: 0 10px;">-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margin: 0 10px;">-</div> <div style="margin: 0 10px;">사업자등록번호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"></div> </div>				
※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.				
① 구	분	② 계 산 기 준	③ 계 산 내 역	④ 공제감면세액
1)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)		$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감면소득}}{\text{과세표준금액}}$		
2) 재해손실세액공제(법인세법 제58조)		$\text{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} \times \frac{\text{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}}{\text{사업용 자산총액}}$		
3)				
계		/	/	
⑤				
1) 재 해 내 용		4) 미납부 또는 납부 할 세액 명세	구 분	세
2) 재 해 발 생 일	. . .		세 액	
3) 공 제 신 청 일	. . .			

작 성 요 령

1. 법인세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④공제감면세액란에 기입합니다.
2.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(토지를 제외합니다)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사업 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.
3.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,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·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
 - 가.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
 - 나.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
4.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.
5. ④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 서식(갑)]에 옮겨 적습니다.